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ING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NG 우량주델타플러스증권60투자신탁1호(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NG 우량주델타플러스증권60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NG 우량주델타플러스증권60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협회코드58758)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ING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2년 10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10월 15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3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 및 모집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4
1. 명 칭	4
2. 모집 예정기간	4
3. 모집 예정금액	4
4. 펀드 존속기간	4
5. 분류	4
6. 집합투자업자	4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1. 주요 투자대상	4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6
3. 수익구조	7
4. 주요 투자위험	7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8
6. 운용전문인력	8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9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0
1. 수수료 및 보수	10
2. 과 세	11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2
IV 요약 재무제표	13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ING 우량주멀타플러스증권60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협회코드58758)

2. 모집 예정기간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3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회사의 개요

회사명	ING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원아이에프씨 20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주식	6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 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 이라 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이라 한다)
④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⑥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 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가능 다만,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⑧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증권의 차입	5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에 대한 차입
⑩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⑫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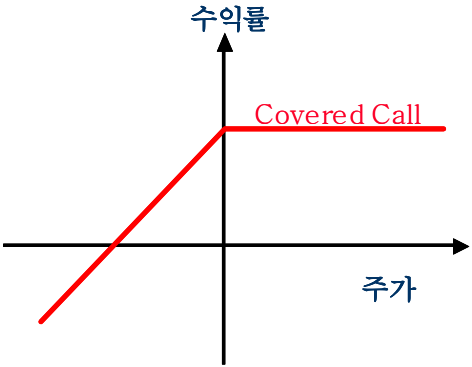
주식부문의 투자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하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가상의 커버드콜(Covered call) 포지션의 델타(주가에 대한 민감도) 변화분 만큼 주식편입비를 조절하는 장기시스템 주식운용 전략을 사용합니다.

② KOSPI50을 구성하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상의 커버드콜(Covered Call) 포지션의 델타(주가에 대한 민감도) 변화분 만큼 주식편입비를 자동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상승(하락) → 델타감소(증가) → 주식매도(매수)하게 됩니다.

1. Covered Call Position?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헷징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 주식 등 포트폴리오 보유 + 콜옵션 매도

2. Covered Call 델타?
 커버드콜포지션의 가치가 주가의 변화에 대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나타냅니다.
 델타란 기초자산(주가)에 대한 커버드콜 포지션의 가격변화의 정도를 말합니다.
 즉 주가가 상승할수록 델타값은 감소하고 주가가하락할수록 델타값은 증가합니다.
 ↳ 주가의 민감도, 기울기의 변화로 이해



③ 종목선택 전략

KOSPI50을 구성하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채권부문의 투자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미만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자산배분 및 유동성확보와 수익성제고를 위해 국공채, 우량채, CD, CP등에 투자 운용합니다.

② 신용등급은 국공채와 A-이상 등급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 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50%]*60% + NPS 2년이하 채권지수 38% + call 2%

NPS채권지수 : 국민연금을 위해 개발된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국내채권인덱스로 2004년 6월30일부터 산정되었으며, 신용등급BBB+이상의 채권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지수.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투자유니버스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②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③ 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3)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매매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가 등의 변동에 따른 시스템매매를 하는 펀드이지만, 시장의 급격한 변동, 거래대상 자산의 유동성부족, 수익구조의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획된 시스템매매를 실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ING자산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해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40% 초과 최고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중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60%이하를 투자하여 위험등급 기준이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 기대하지만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국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해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ING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ING자산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년도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하상용 1969 팀장	-	-

- 現ING자산운용 인텍스 시스템 운용팀
- 하나UBS자산운용 투자공학팀
- 대한투자신탁 주식투자부
- 서울대 대학원 경영 석사
- 영남대 경영 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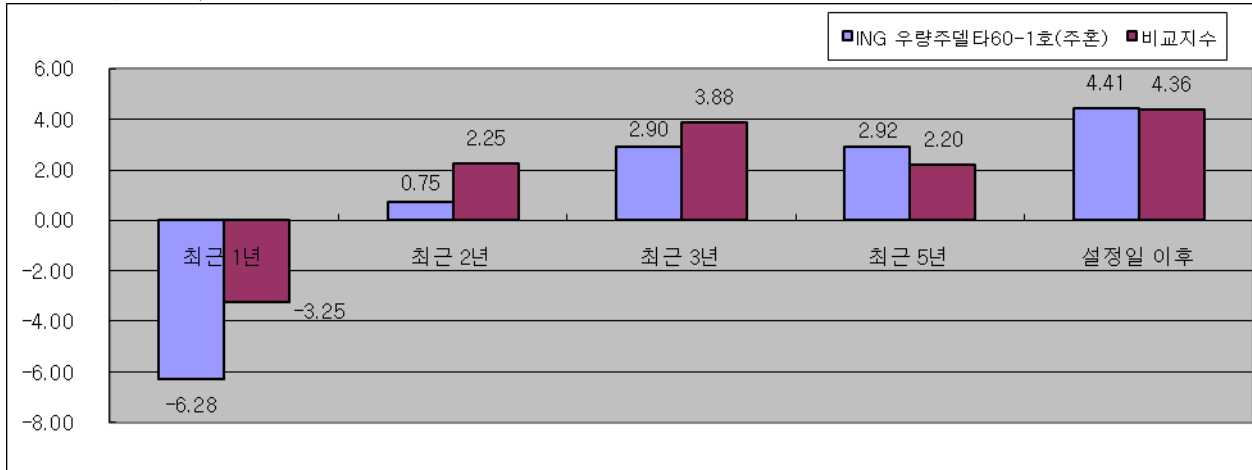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 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평균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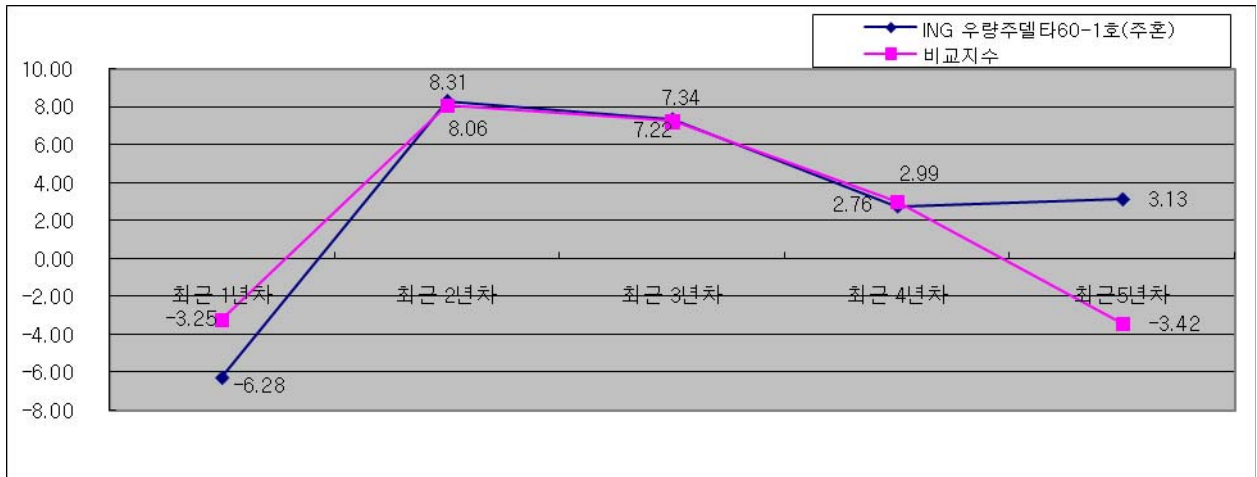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7.27 ~12.07.26	10.07.27 ~12.07.26	09.07.27 ~12.07.26	07.07.27 ~12.07.26	06.07.26 ~12.07.26
ING 우량주델타 60-1 호(주훈)	-6.28	0.75	2.90	2.92	4.41
비교지수	-3.25	2.25	3.88	2.20	4.36

주 1) 비교지수 : [KOSPI 50%]*60% + NPS 2년이하 채권지수 38% + call 2%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7.27 ~12.07.26	10.07.27 ~11.07.26	09.07.27 ~10.07.26	08.07.27 ~09.07.26	07.07.27 ~08.07.26
ING 우량주델타 60-1 호(주훈)	-6.28	8.31	7.34	2.76	3.13
비교지수	-3.25	8.06	7.22	2.99	-3.42

주 1) 비교지수 : [KOSPI 50%]*60% + NPS 2년이하 채권지수 38% + call 2%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70%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30%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45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660%	
신탁업자 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0%	
기타 비용	0.004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5658%	-
증권 거래비용	0.3353%	사유발생시

* 판매회사의 보수율은 매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가.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2일 까지 : 1.222%
- 나.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 까지 : 1.144%
- 다.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 까지 : 1.066%
- 라. 2013년 5월 3일 이후 : 0.900%

주1) 기타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7.26 ~ 2012.07.25]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7.26 ~ 2012.07.25]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익증권	164	473	804	1,74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환매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환매수수료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70%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30%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2) 재투자과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IV 요약 재무제표(단위:원)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2.07.25)	(2011.07.25)	(2010.07.25)
운용자산	3,938,518,279	5,263,893,320	11,116,384,384
증권	3,927,131,392	5,007,414,367	10,732,010,89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386,887	256,478,953	384,373,49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70,546,017	234,113,673	724,302,262
자산총계	4,209,064,296	5,498,006,993	11,840,686,64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3,872,983	181,985,779	283,923,994
부채총계	113,872,983	181,985,779	283,923,994
원본	4,370,496,578	4,917,686,791	10,788,188,120
수익조정금	24,664,679	-326,585,093	-510,866,857
이익잉여금	-299,969,944	724,919,516	1,279,441,389
자본총계	4,095,191,313	5,316,021,214	11,556,762,652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1.07.26 - 2012.07.25)	(2010.07.26 - 2011.07.25)	(2009.07.26 - 2010.07.25)
운용수익	-224,704,949	861,593,172	1,593,659,673
이자수익	115,254,082	209,663,417	459,304,056
배당수익	15,557,464	32,726,510	57,009,400
매매/평가차익(손)	-355,516,495	619,203,245	1,077,346,217
기타수익	2,060	23,529	130,424
운용비용	74,350,466	134,559,106	309,702,143
관련회사 보수	74,350,466	134,559,106	309,702,14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916,589	2,138,079	4,646,565
당기순이익	-299,969,944	724,919,516	1,279,441,389
매매회전율	934.29	764.89	842.41

주 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